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건소 위생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47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11. 10.
- 라. 회부일자 : 2022. 11. 10.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3. 설치근거

- 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4.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가. 기금사업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2000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음.
- 나.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개선사업 지원.

5.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 [㉡] $㉡=㉢+㉣$	비고
		수입 [㉢]	지출 [㉣]	증감 [㉤] $㉤=㉢-㉣$		
식 품 진 흥 기	885,230	67,667	340,530	△272,863	612,367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 말 조성액 [㉠]	용자금 미회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
식 품 진 흥 기	612,367	0	0	612,367

다. 자금 운용 계획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계	67,667	40,509	27,158
이자수입	30,105	20,053	10,052
과징금 수입	26,562	9,456	17,106
시비보조금	11,000	11,000	0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계	340,530	340,330	200
비용자성 사업비	190,530	190,330	200
민간용자금	150,000	150,000	0

6. 검토의견

-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위생 교육 홍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사용됨.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105천원,
과징금 수입 26,562천원
시비보조금 11,000천원
총 67,667천원이며,
지출내역은
비용자성 사업비 190,530천원
민간융자금 150,000천원
총 340,530천원임.
-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자 계획되었으며 2023년도 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12.>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식품위생법

[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6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 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정 [2000.12.26 조례 제301호]

(일부개정) 2016.10.14 조례 제88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37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0.14.>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6.10.14.>
- 3."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10.14.>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10.14.>
5. 삭제 <2016.10.14>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영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16.10.1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0.14.>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6.10.14.>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6.10.14.>

[제목개정 2016.10.14.]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0.14.>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개정 2016.10.14.>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신설 2016.10.14.>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6.10.14.>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개정 2016.10.14.>
7.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신설 2016.10.14.>
8.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개정 2016.10.14.>

② 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 대표자가 지원대상과 지원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요청한 경우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10.14.>

1. 기금운용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5.5.24, 2016.10.14>
2. 기금출납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팀장) <개정 2005.5.24, 2011.08.12, 2016.10.14>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직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4.>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6.10.1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 변경 <개정 2016.10.14.>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개정 2016.10.14.>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6.10.14.>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4.>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6.10.14.>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5.24., 2016.10.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심의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1.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

⑥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팀장)가 된다. <개정 2005.05.24, 2011.08.12, 2016.10.14> [중전 제4항에서 이동 <2016.10.14.>]

⑦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전 제5항에서 이동 <2016.10.14.>]

⑧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중전 제6항에서 이동 <2016.10.14.>]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14.> [중전 제7항에서 이동 <2016.10.14.>]

제3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용자

제7조(용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자총액·용자한도·용자조건·용자절차 등의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구"라 한다) 관할지역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홍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용자대상으로 하지 아니 한다.

제9조(용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용자하여야 한다.

제10조(용자한도 및 조건 등) ①시설개선자금의 용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용자금리 ,용자조건,용자절차 등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용자금 대여)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용자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②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구와 해당 구금고 간의 권리·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와 구 금고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6.10.14.>

[제목개정 2016.10.14.]

제4장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제12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①부정·불량 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대상,신고대상별 포상금액, 포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05.24.>